

「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안」 심사보고

제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2.24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2. 10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2. 17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1호)
- 다. 2004. 2. 24 : 제83회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건축과장 : 박경진)

가. 제안이유

- 서포면 지역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남해안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 수립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
- 시설용량 700m³/일의 하수처리를 함으로써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서포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결정(안)

| 구분 | 시 설 명 | 위 치 | 면 적(m ²) | | | 최 초 결정일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|
| | | | 기정 | 변경 | 증감 | | |
| 신설 | 하 수 도 (하수종말처리장) | 서포면 구평리 149번지일원 | - | 7,430 | 7,430 | - | |

○ 결정사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사항

다. 법적근거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영태)

가. 서포면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1년 기준 처리인구 2500명, 예정처리 구역면적 80.23ha를 목표로 간헐포기 접촉산화공법으로 시설용량 일 최대 700m³ 처리하는 시설로서 본 처리장 부지 7,430m². 차집관로 소요부지 7,913m²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대상인 본 처리장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

○ 용도지역 : 관리지역

○ 위치선정의 적정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여부

-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위치는 서포면 선전리 702번지 일원 16필지 6,727m²에 대하여 2003.5.6 환경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 사천시장이 2003.5.14자로 인가내용을 고시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
- 선전마을 리장 김하중 외 43명으로부터 횃집운영 등 환경적 문제로 위치 변경요구 건의와 설치반대로 수 차례 선진지 견학은 물론 설명회,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였으나 계속적인 반대로 추진에 애로를 겪어 오던 중
- 서포면 구평리 대포 마을리장 김종윤 외 78명(서포면리장단 22명 전원, 대포마을주민 57명)으로부터 구평리 153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치 건의서가 2003.7.29 접수되어
- 2003.10월 환경부의 담당과장과 사업변경에 따른 사전협의결과 긍정적인 답변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2004.2.10 경상남도지사를 경유 환경부 장관에게 서포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인가 변경신청 중으로 현재까

지 환경부의 변경인가는 득하지 못한 상태임

-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변경된 지역은 하류에 약 40ha의 집단농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유치건의에 의거 선정된 부지로 주변 토지소유자의 편입(매수)요청민원이 일부 있을 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○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확보 여부

- 서포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오폐수 방류가 증가되는 구평마을 외 6개 마을(2021년 기준 처리인구 2,500명)을 처리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자연마을 형태로 산재되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제외되었으며
- 총사업비는 10,915백만원으로서 양여금이 7,191백만원, 도비 1,862백만원 시비 1,862백만원으로 년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도 4,276백만원, 2004년도 3,582백만원, 2005년 이후 3,057백만원이나 2004년도 3,582백만원 중 환경부의 예산내시액은 1,747백만원으로 미 내시액 1,835백만원에 대하여는 계속 확보 노력중이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목표연도인 2005년에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임.

○ 행정절차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 : 별다른 문제점 없음

나.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.